

《2022. 6월 1차》
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**과 **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2022년 신년화두 慎終謀始 (신종모시)

『맺음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』

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**청렴·수원**

“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,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등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의 기반 마련

관 련 내 용

○ 처리절차

-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(부당한 지시)를 하였을 경우
 - * 부당한 이익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
- 하급자는 당해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가능
 - *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함
-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
- **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시를 취소·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수행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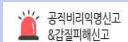
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7조(복종의 의무)와 관계

-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소지 제거
 -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(대판2015.10.29. 선고 99도636 판결)

위 반 예 시

-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,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토록 부당지시
- 대형 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 승인 해 주도록 부당지시
- 수학여행 업체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

부조리 신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 클릭, 케이휘슬 연결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